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34호

2020.12.14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0-333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

자치법규**[입법예고]**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3333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2월 14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이유

관리운영직 자연감소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리운영직, 시설관리직의 퇴직 및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직급·직렬 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재배치함 (67명).

나. 정신응급환자 치료 지원인력 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함.
(행정8급 △2명 → 사회복지8급 +2명).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: 02-2133- 6732, FAX: 02-2133-0822, E-mail: kairos16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